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충 청 남 도
(경 제 실)

목 차

< 일 반 회 계 >

○ 경제정책과	-----	1
○ 일자리노동정책과	-----	11
○ 소상공기업과	-----	43
○ 투자입지과	-----	85
○ 국제통상과	-----	99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1. 경제정책업무추진 5
2. 지역경제교육사업 7

경제정책업무추진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	경제, 고용, 사회적경제 업무추진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제통상분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편성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2,700천원 + 감액: 2,700천원 】**
- 사 업 량 : 경제통상분야 중앙부처 회의 참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중앙부처 정책관련 회의 참석 등
 - 경제진흥원 및 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석 등
 - 시군 경제회의 및 경제통상분야 사업현장 출장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경제정책업무추진 : 2,700천원 ○ 경제통상분야 회의참석(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 45천원 × 20명 × 3회 = 2,700천원 [변 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출장 감소로 관련 국내여비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2,700	0	△2,700		
국 비							
도 비	0		2,700	0	△2,7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	2,456	244	90.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송무경 (행) 2210	신일호 (행) 3301	조용희 (행) 2211

지역경제교육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	경제정책개발
	통 계 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기획재정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합리적 경제의사 결정 능력 배양
- 사업 위치 : 도내 학교, 각 기관 강당, 전통시장 등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000천원 【 지정액: 50,000천원 + 감액 : 21,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 사 업 량 : 총100회 / 3,000명
- 사업시행방법 :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경제교육센터
- 사업 내용 : 학생, 소외계층 등 도민에 대한 대상별, 계층별 실용적인 경제생활 실습 및 정보 제공
- 지원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항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지역경제교육사업 : 50,000천원 ○ 인건비 : 9,616천원 · 연구보조원 : 77,600원×1인×100일=7,760천원 · 4대보험 : 7,760천원×11%=853,600원 · 성과급 : 1,002,400원×1인=1,002,400원 ○ 국내여비 : 40천원×1인×40회=1,600천원 ○ 사업운영비 : 3,500천원 · 사무용품 및 교육준비비 : 100천원×12월=1,200천원 · 간담회 및 회의비 : 100천원×12월=1,200천원 · 선택적복지운영 : 900천원×1월=900천원 · 건강검진 : 200천원×1회=200천원 ○ 경제교육 : 30,284천원 · 학교방문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아동) : 220천원×1인×45회=9,900천원 · 취약계층교육 - 강사비(성인1) : 220천원×1인×10회=2,200천원 - 강사비(성인2) : 350천원×1인×10회=3,500천원 - 강사비(아 동) : 220천원×1인×25회=5,500천원 · 전통시장 어린이 경제캠프 - 강사비(아 동) : 220천원×3인× 3회=1,980천원 - 제잡비(온누리상품권 등) : 5천원×40인×3회=600천원 · 일반인교육(소상공인등) - 강사비(일반) : 350천원×1인×10회=3,500천원 · 교육제잡비(교재인쇄비 및 기타 제잡비) - 교재인쇄비 : 100천원×1회×12월=1,200천원 - 교육기념품 : 1,120원×1700개=1,904천원 ○ 일반관리비 : 50,000천원×0.1=5,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교육사업 : 29,000천원 ○ 인건비 : 8,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 80,000원×1인×90일=7,200천원 · 성과급 : 1,000천원×1인=1,000천원 ○ 경제교육 : 10,69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 : 350천원×10회=3,500천원 · 도서인쇄비 : 100천원×10회=1,000천원 · 행사홍보비 : 1,590천원×1식=1,590천원 · 교육영상제작 : 4,600천원×1식=4,600천원 ○ 국내여비 : 51천원×10회=510천원 ○ 사업운영비 : 5,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비 : 350천원×12월=4,200천원 · 선택적복지 : 900천원×1회=900천원 ○ 일반관리비 : 50,000천원×9%=4,500천원 	
총사업비	29,000천원(도비 2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9,000		50,000	29,000	△21,000		
국 비							
도 비	29,000		50,000	29,000	△2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송무경 (행) 2210	신일호 (행) 3301	강유석 (행) 3315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1. 충남 일자리 종합 컨설팅 15
2.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성립전) 18
3. 고용우수기업 지원 20
4. 장애인고용활성화기업 지원 22
5.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24
6.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26
7. 노동권익교육 추진 28
8. 노동정책포럼 운영 30
9.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32
10.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5
11.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38
12.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40

충남 일자리 종합 컨설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별 고용문제의 본질, 노동시장의 특성이 상이함에도 중앙정부의 일률적,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 시달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종합컨설팅 추진
 - ※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행하였으나, 사업의 합목적성을 위해 연구용역(일반용역)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9,020천원** 【 **기정액: 153,000천원 + 감액 : 13,980천원** 】
 - ※ 감액 사유 : 사업예산 153,000천원 중 낙찰액 139,020천원, 낙찰차액 13,980천원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반납
- 사 업 량 : 5개 사업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일자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일자리대상 평가 수행 컨설팅
 -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 성과 모니터링 (정책고용효과 분석 1개 사업, 사업모니터링 7개 사업)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고용통계 및 고용보험통계 추이분석 및 산업별 고용 통계 분석
 - 도 및 시군 일자리사업 발굴 컨설팅 및 워크숍
 - 충청남도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 사업화 및 LIP(Local Initiative Program) 매니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연구용역(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전문기관
- 사업 내용
 -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을 위한 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및 시군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도 및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도비 및 시군비 추진 일자리사업 성과 모니터링
 - 주민발안형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 도민 공모사업 선정, 사업화 컨설팅, 사업현황 점검, 모니터링
 - 일자리 정책, 사업발굴을 위한 포럼 및 토론 개최
 - 충청남도 고용·노동 관련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제9조(일자리 정책평가) 도지사는 도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일자리 종합컨설팅 사업 : 15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인건비 : 82,2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3,229\text{천원} \times 2) \times 1\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25 \approx 16,149\text{천원}$ · 연 구 원 : $(2,477\text{천원} \times 2) \times 2\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4 \approx 39,624\text{천원}$ · 연구보조원 : $(1,655\text{천원} \times 2) \times 2\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4 \approx 26,487\text{천원}$ ○ 세부사업 추진비 : 42,06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text{책임연구원 } 65\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0\text{회}) + (\text{연구원/보조원 } 60\text{천원} \times 1\text{명} \times 10\text{회}) \approx 3,650\text{천원}$ · 전산처리비 : $100\text{천원} \times 10\text{개월} = 1,000\text{천원}$ · 회의비(수당 등) : $100\text{천원} \times 5\text{명} \times 4\text{회} = 2,000\text{천원}$ · 교통/통신비 : $20,000\text{원} \times 10\text{개월} = 200\text{천원}$ · 사업비용 : 35,21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공지세 지원사업 : 10,000천원 -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 12,120천원 -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3,320천원 -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 5,275천원 - 일자리 포럼 준비 : 4,500천원 ○ 일반관리비 : 6,216천원 ○ 이윤 : 9,138천원 ○ 부가가치세 : 13,967 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일자리 종합 컨설팅 사업 : 139,0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인건비 : 75,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3,229\text{천원} \times 2) \times 3\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455 \approx 44,100\text{천원}$ · 연 구 원 : $(2,477\text{천원} \times 2) \times 2\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495 \approx 24,500\text{천원}$ · 연구보조원 : $(1,655\text{천원} \times 2) \times 1\text{명} \times 10\text{개월} \times 0.423 \approx 7,000\text{천원}$ ○ 세부사업 추진비 : 56,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50\text{천원} \times 6\text{명} \times 1.6\text{회} \times 10\text{월} = 4,800\text{천원}$ · 인쇄 및 재본비 : $600\text{천원} \times 10\text{개월} = 6,000\text{천원}$ · 사무용품비 : $400\text{천원} \times 10\text{개월} = 4,000\text{천원}$ · 회의 및 자문수당 : $200\text{천원} \times 3\text{명} \times 10\text{월} = 6,000\text{천원}$ · 워크숍 : $5,000\text{천원} \times 4\text{회} = 20,000\text{천원}$ · 회의식비 : $8\text{천원} \times 15\text{명} \times 3\text{회} \times 10\text{개월} = 3,600\text{천원}$ · 다과비 : $140\text{천원} \times 10\text{개월} = 1,400\text{천원}$ · NIP매니저 수당 : $400\text{천원} \times 3\text{명} \times 5\text{개월} = 6,000\text{천원}$ · 강의 및 원고료 : $556\text{천원} \times 9\text{명} \approx 5,000\text{천원}$ ○ 일반관리비 : 6,620천원 	
총사업비	139,020천원(도비 139,0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9,020		153,000	139,020	△13,980		
국 비							
도 비	139,020		153,000	139,020	△13,98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7,000	197,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강영규 (행) 3401	김보경 (행) 2241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사업 위치 : 국내
- 사업 기간 : 2020.10.1.~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 지정액: 0천원 + 증액: 10,0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국고보조금 지원액(성립전) 반영
- 사 업 량 :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식, 직원격려를 위한 물품구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수상으로 인한 인센티브(자율활용액) 지원으로,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및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비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9조의2 제1항

<p>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p> <p>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고용정책기본법 제9조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p> <p>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미편성</p> <p>[변 경]</p> <p>■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성립전) : 1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 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임차 : 500천원×1대×2일 = 1,000천원 · 숙박비 : 150천원×10실 = 1,500천원 · 강의장 사용료 : 300천원×2일 = 600천원 · 다과비 : 5천원×20인×2회 = 200천원 · 식비 : 20천원×20인×4식 = 1,600천원 · 책자 인쇄비 : 7천원×20부 = 140천원 · 현수막 인쇄 : 50천원×1개 = 50천원 · 행사준비 용품 등 = 910천원 ○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비 : 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구입비 : 1천원×4,000개 = 4,000천원 	
총사업비	10,000천원(국비 10,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10,000	10,000		신규
국 비	10,000		0	10,000	1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2	정상아 (행) 2212

고용우수기업 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고용우수기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지역청년 등 채용 유도 및 청년 등의 취업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7.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0,000천원 【 기정액: 230,000천원 + 감액 : 1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전년도에 준하여 지원계획(11개 기업에 각20,000천원) 수립으로 사업 집행잔액 발생
- 사 업 량 : 11개 기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중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최소 5명 이상)인 10개 기업
(지원내용) 근로환경개선금 1기업당 20,000천원,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지원 제공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p>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우수기업 지원 : 230,000천원 ○ 근로환경개선금 23,000천원×10개사= 230,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우수기업 지원 : 220,000천원 ○ 근로환경개선금 20,000천원×11개사= 220,000천원 	
총사업비	220,000천원(도비 2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00		230,000	220,000	△10,000		
국 비							
도 비	220,000		230,000	22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80,000	20,000	9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강영규 (행) 3401	김보경 (행) 2241

장애인고용활성화기업 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고용우수기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강화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분위기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 【 기정액: 60,000천원 + 감액 : 30,000천원 】
 - ※ 감액 사유 : 당초 계획(6개 기업, 각10,000천원 지원) 대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기업 감소(3개소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사 업 량 : 3개 기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6개 기업 (지원내용) 장애인고용환경개선금 1기업당 10,000천원 지급 및 표창 수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적 경비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시·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장애인고용활성화기업 지원 : 60,000천원 ○ 장애인고용환경개선금 : 10,000천원×6개사= 60,000천원 [변 경] ■ 장애인고용활성화기업 지원 : 30,000천원 ○ 장애인고용환경개선금 : 10,000천원×3개사= 30,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60,000	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60,000	30,000	△3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강영규 (행) 3401	김보경 (행) 2241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7.1.~2020.11.30.(신규사업)
- 예 산 액 : **35,946,229천원** 【 지정액: 0천원 + 증액: 35,946,229천원 】
 ※ 신규 편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30만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3차 추경 반영
- 사 업 량 : 7,09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생활방역, 농·어가 일손돕기, 재해예방, 자자체 특성화 사업 등 10개 유형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p>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p> <p>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정부 3차 추경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p> <p>[변 경]</p> <p>■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 37,838,870천원</p> <p>○ 4,348명×4시간×26일×8,590원×4개월×1.25(재료비 등)≒ 19,421,646,400원</p> <p>○ 2,750명×6시간×26일×8,590원×4개월×1.25(재료비 등)≒ 18,425,550,000원</p>	
총사업비	37,838,870천원(국비 34,053,587, 도비 1,892,642, 시군비 1,892,64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7,838,870		0	37,838,870	37,838,870		신규
국 비	34,053,587		0	34,053,587	34,053,587		
도 비	1,892,642		0	1,892,642	1,892,642		
시군비	1,892,641		0	1,892,641	1,892,641		
기 타							

* 보조율 :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2	주경 (행) 3418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일자리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0.1.~20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266,000천원** 【 기정액: 0천원 + 증액: 3,266,0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2.4만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4차 추경 반영
- 사 업 량 : 975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생활방역, 태풍·수해 등 재해복구, 산불예방 등 주민 생계지원 직접일자리 추진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정부 4차 추경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p> <p>[변 경]</p> <p>■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 3,266,000천원</p> <p>○ 975명×6시간×26일×8,590원×2개월×1.25(재료비 등)≐ 3,266,347,500원</p>	
총사업비	3,266,000천원(국비 3,26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66,000		0	3,266,000	3,266,000		신규
국 비	3,266,000		0	3,266,000	3,266,0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2	주경 (행) 3418

노동권익교육 추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동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 및 노동권익 보호 인식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000천원** 【 **기정액: 36,000천원 + 감액 : 2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노동권익교육 추진 사업비 조정
- 사 업 량 : 노동권익교육 4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무원, 노동자, 청소년, 대학생 등에 대한 노동권익교육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p>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노동권익교육 추진 : 36,000천원</p> <p>○ 강사수당 : 250천원×120회= 30,000천원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p> <p>○ 노동교육 책자 제작비 : 10천원×600부= 6,000천원</p>	

	[변 경] ■ 노동권익교육 추진 : 11,000천원 ○ 강사수당 : 250천원×40회= 10,000천원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노동교육 책자 제작비 : 10천원×100부= 1,000천원	
총사업비	11,000천원(도비 1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000		36,000	11,000	△25,000		
국 비							
도 비	11,000		36,000	11,000	△2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36,869	3,131	92%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3	이재원 (행) 2243

노동정책포럼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동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360천원** 【 **기정액: 16,200천원 + 감액 : 12,84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제한에 따른 노동정책포럼 운영 규모 축소
- 사 업 량 : 노동정책포럼 1회(하반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0년 주요 노동정보 및 노동정책관련 공유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한 노동정책의 보완 발전 방향 모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노동정책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포럼 운영(행사운영비) : 7,6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료 : 250천원×6명×2회=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대관료 : 1,000천원×2회= 2,000천원 ○ 인쇄비 : 20천원×60부×2회= 2,400천원 ○ 현수막, 배너 등 : 140천원×2회 = 280천원 ■ 노동정책포럼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8,5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 8천원×60명×2식×2회= 1,920천원 ○ 교통비 : 10천원×60명×2회= 1,200천원 ○ 숙박비 : 225천원×12실×2회= 5,4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포럼 운영(행사운영비)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료 : 250천원×2명×1회= 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인쇄비 : 10천원×30부×1회= 300천원 	

	○ 현수막, 배너 등 : 200천원×1회= 200천원 ■ 노동정책포럼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2,360천원 ○ 토론비 : 100천원×20명×1회 = 2,000천원 ○ 식대 : 8천원×20명×1식 = 160천원 ○ 교통비 : 10천원×20명×1회 = 200천원	
총사업비	3,360천원(도비 3,3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60		16,200	3,360	△12,840		
국 비							
도 비	3,360		16,200	3,360	△12,84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200	13,127	3,073	81%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3	오인선 (행) 341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동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감정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및 문제 해결 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500천원 【 기정액: 30,000천원 + 감액 : 18,500천원 】**
 - ※ 감액 사유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세부사업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제한에 따른 도내 감정노동자 관련자 워크숍 규모 축소
- 사 업 량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1회
감정노동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1회
도내 감정노동자 관련자 워크숍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 대책 추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사무관리비) : 7,200천원 ○ 감정노동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 7,2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0여 개소×2회= 6,000천원 · 책자인쇄비 : 20천원×30부×2회= 1,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행사운영비) 8,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 : 8,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료 : 490천원×2명×2회= 1,960천원 · 대관료 : 1,000천원×2회= 2,000천원 · 책자 인쇄료 : 20천원×100부×2회= 4,000천원 · 현수막 등 : 320천원×2회= 640천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행사실비지원금) : 14,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 : 5,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 8천원×100명×2식×2회= 3,200천원 · 교통비 : 10천원×100명×2회= 2,000천원 · 숙박비 : 225천원×20실×2회= 9,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사무관리비) 7,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 3,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수당 : 150천원×13명*×1회= 1,9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내부공무원) 2명 제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용 · 책자인쇄비 : 20천원×30부×1회= 600천원 · 현수막 및 배너 등 기타 운영비= 1,050천원 ○ 감정노동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 3,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료 : 370천원×3명×1회= 1,1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대관료 : 1,000천원×1회= 1,000천원 · 책자인쇄비 : 20천원×40부×1회= 800천원 · 현수막 및 배너 등 기타 운영비= 690천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행사운영비) 3,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 : 3,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료 : 490천원×2명×1회= 980천원 · 대관료 : 1,000천원×1회= 1,000천원 · 책자 인쇄료 : 20천원×50부×1회= 1,000천원 · 현수막 등 : 320천원×1회= 320천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행사실비지원금)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 8천원×50명×1식×1회= 400천원 · 교통비 : 12천원×50명×1회= 600천원 	
총사업비	11,500천원(도비 11,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500		30,000	11,500	△18,500		
국 비							
도 비	11,500		30,000	11,500	△18,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3	이재원 (행) 2243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사민정간 협력을 통한 지역 내 고용과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불균형 해소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4,000천원 【 기정액: 160,000천원 + 감액 : 16,000천원 】**
 - ※ 감액 사유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금액이 144,000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감액
- 사 업 량 : 8개 분야 사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사업성과보고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실무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워크숍, 정책간담회)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충남 고용·노동리포트 발행, 충남 고용·노동컨퍼런스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회 운영(실무위원회 회의 월1회, 분과위원회(6개 분과, 년 4회))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30,000천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 : 20,000천원 ○ 충남도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 : 20,000천원 ○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업 내용, 성과 콘텐츠 개발 : 20,000천원 ○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 17,00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 10,000천원 ○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 10,000천원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회체 운영 : 33,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4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26,000천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 : 18,000천원 ○ 충남도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 : 14,000천원 ○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업 내용, 성과 콘텐츠 개발 : 20,000천원 ○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 13,00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 10,000천원 ○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 10,000천원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회체 운영 : 33,000천원 	
총사업비	1440,000천원(국비 72,000, 도비 7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44,000		160,000	144,000	16,000		
국 비	72,000		80,000	72,000	8,000		
도 비	72,000		80,000	72,0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000	16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승열 (행) 2240	김일환 (행) 3404	이원복 (행) 3414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진출기업과 현지공장 방문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함양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
- 사업 위치 : 베트남 호치민 대한비나(대한전선 베트남 법인), 화승비나(화승 인터스트리 베트남 법인) 등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45,000천원 + 감액: 4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해외 출입불가로 인한 사업불가능으로 사업포기
- 사 업 량 : 국외연수 1회(4박 5일)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
- 사업 내용 : 도내 모범조합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해외 노동조합·노사관계기관 방문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 90,000천원 ○ 베트남 호치민 노조관계 기관 방문 : 90,000천원 · 항공료 : 650천원(단가)×80명= 52,000천원 · 숙박비 : 50천원(1인 단가)×4박×80명= 16,000천원 · 식대 : 8천원(단가)×15식×80명= 9,600천원 · 보험 : 10천원(단가)×80명= 800천원 · 차량운행(충남-인천) : 500천원(45인승 단가)×2대×2일= 2,000천원 · 현지가이드 : 150천원(1일 단가)×5일×4명=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차량운행 : 400천원(45인승 단가)×2대×5일= 4,000천원 · 현지공항버스비 : 8천원(단가)×2회×80명= 1,280천원 · 비상약 및 문구류 : 15.25천원(1인당 단가)×80명= 1,220천원 · 현수막 : 50천원(단가)×2장= 100천원 <p>[변 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해외 출입불가로 인한 사업불가능으로 사업포기</p>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90,000	0	△90,000		
국 비							
도 비	0		45,000	0	△45,000		
시군비							
기 타	0		45,000	0	△45,000		

* 보조율 : 도비 50%,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승열 (행) 2240	김일환 (행) 3404	장동호 (행) 2244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2·3월간 무급휴업·휴직 및 2월~4월22일까지 실직한 노동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5.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1,200,000천원** 【 지정액: 16,000,000천원 + 감액 : 4,800,000천원 】
 ※ 감액 사유 : 당초계획 32,000가구 예상하여 16,000,000천원 계상하였으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11,200,000 교부확정, 집행잔액 4,800,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22,400가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코로나19로 2·3월간 무급휴업·휴직 및 2월~4월22일까지 실직한 노동자 가구당 1백만원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 32,000,000천원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 1,000천원×32,000가구= 32,000,000천원 [변 경]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 22,400,000천원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 1,000천원×22,400가구= 22,400,000천원	
총사업비	22,400,000천원(도비 11,200,000, 시군비 11,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400,000		32,000,000	22,400,000	9,600,000		신규
국 비							
도 비	11,200,000		16,000,000	11,200,000	△4,800,000		
시군비	11,200,000		16,000,000	11,200,000	△4,8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강영규 (행) 3401	김보경 (행) 2241

소상공기업과

소상공기업과

1.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47
2.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성립전) 49
3.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 51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53
5. 지역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천안, 공주, 당진) .. 55
6. 벤처투자조합(펀드) 투자기업 발굴협의회 운영 ... 57
7.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코로나19 대응) 59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사업) 61
9. 지역상품전시회 지원(국가직접지원) 63
10. 전통시장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65
11.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지원 67
12.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69
13.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71
14.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73
15.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 75

16.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지원사업(성립전) · 77
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추경)(성립전) · 79
18.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81
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3차추경)(성립전) · 83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충남경제진흥원)
- 사업 기간 : 2020. 10. ~ 12.(2020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87,725천원 【 지정액: 0천원 + 증액: 187,725천원 】**
- 사 업 량 :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경제진흥원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② 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당초예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하나 진흥원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금년도 결산 예측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추경 반영 [변 경] ■ 사업명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 감가상각비 : 187,725천원 · 건 물 : 159,734천원 · 구축물 : 23,452천원 · 집기비품 : 2,470천원 · 시설장치 : 2,069천원 ○ 연도별 감가상각비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연 도</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r> <tr> <td>감가상각비</td> <td>239,653천원</td> <td>-</td> <td>187,725천원</td> </tr> </table>		연 도	2018	2019	2020	감가상각비	239,653천원
연 도	2018	2019	2020					
감가상각비	239,653천원	-	187,725천원					
총사업비	187,725천원(도비 187,725)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7,725		187,725	0	187,725		신규
국 비							
도 비	187,725		187,725	0	187,72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2020년 신규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20. 12.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종규 (행) 2220	남상길 (행) 3434	마춘정 (행) 3439

<h1>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성립전)</h1>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코리아세일페스타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 타개 및 매출향상을 위해 코세페 연계하여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 사업위치: 충청남도 내 (온·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판매전 60개사
 - (온라인) 소셜커머스채널 위메프 활용 50개사
- 사업기간: 2020. 11. 2. ~ 12. 31.(2020년 신규사업)
- 예 산 액 : **64,000천원** 【 기정액: 0천원 + 증액: 64,0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20년 9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분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비 편성
- 사 업 량 : 110개사
 - (오프라인) 2020. 11. 13.(금) ~ 11. 15.(일) (3일간), 천안 독립기념관 / 60개사
 - (온 라 인) 2020. 11. 2.(월) ~ 12. 31.(목) (60일간), 위메프 활용 / 50개사
- 사업시행방법 : 중소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 기획전
- 사업시행주체 : 충남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온.오프라인 판촉전
 - (오프라인) 단풍나무길 축제 연계 충남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 (온라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충남 온라인 판매전
- 지원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p> <p>제26조(판로지원사업)</p> <p>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 ■ 공모사업 진행으로 본예산에 미편성</p> <p>[변 경] ■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 214,000천원 ○ (국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사업: 64,000천원 · (오프라인) 32,000천원×1식 = 32,000천원 · (온라인) 32,000천원×1식 = 32,000천원 ○ (도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판매전) : 77,000천원 · 오프라인 판매전 용역비 : 75,000천원×1식 = 75,000천원 · 용역계약 평가수당 : 200천원×10명=2,000천원 ○ (도비) 충남 온라인기획전(온라인 판매전) : 73,000천원 · 온라인 판매전 용역비 : 73,000천원×1식 = 73,000천원</p>	
총사업비	214,000천원(국비 64,000 도비 150,000천원) * 도비는 기교부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14,000		150,000	214,000	64,000		신규
국 비	64,000			64,000	64,000		
도 비	150,000		150,000	150,000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종규 (행) 2220	남상길 (행) 3434	마춘정 (행) 3439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재원변경)	정책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	벤처기업 육성
	세부사업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중소기업 창업 확대 및 내포 신도시 활성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
- 사업 기간 : 2020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 【 기정액: 1,000,000천원 + 증액: 0천원 】**
- * 재원변경 : 국고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재원변경 사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예산 계상 오류에 따른 변경
- 사 업 량 : 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 사업 내용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 1,000,000천원 <input type="checkbox"/>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설계비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0		1,000,000	1,000,000	0	24,000,000	
국 비	16,000,000		1,000,000	1,000,000	0	15,000,000	국고보조금 → 국고균특보조금
도 비	9,000,000		0	0	0	9,0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2023년까지 총사업비 보조율 : 국비 64%, 도비3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 6.	2020. 9.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벤처지원팀	이종규 (행) 2220	남승홍 (행) 3437	이승원 (행) 3445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정책사업	중소기업육성
	단위사업	금융 및 기술 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무를 위탁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로 기업의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33,750천원** 【 **기정액: 300,000천원 + 증액: 33,750천원** 】
 - ※ 증액 사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따른 사무위탁수수료 증가
- 사업 량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350억원 사무위탁 수수료 1식
 - 기존 수수료는 0.05%이나 긴급자금 위탁수수료는 0.025%로 50% 감액적용($1,350\text{억원} \times 0.05\% \times 50\% = 33,750\text{천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 내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따른 사무위탁 수수료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업무위탁)
 ① 기금관리자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와 용자대상자 선정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용자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수수료 : 300,000천원 ○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 : 용자 추천액(2,300억원)×0.1%=230,000천원 ○ 소상공인자금 : 용자 추천액(1,400억원)×0.05%=70,000천원 [변 경]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수수료 : 333,750천원 ○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 : 용자 추천액(2,300억원)×0.1%=230,000천원 ○ 소상공인자금 : 용자 추천액(1,400억원)×0.05%=70,000천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용자 추천액(1,350억원)×0.025%=33,750천원(50% 적용)	
총사업비	333,750천원(도비 333,7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3,750		300,000	333,750	33,750		
국 비							
도 비	333,750		300,000	333,750	33,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278,759	21,241	92.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이종규 (행) 2220	윤태노 (행) 3435	조정제 (행) 2223

지역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천안, 공주, 당진)	정책사업	중소기업 육성
	단위사업	금융 및 기술 지원
	세부사업	충남신용보증재단지원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천안, 공주, 당진)의 지역신용보증 출연금에 대한 30%의 매칭 출연금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공주, 당진)
- 사업 기간 : 2020. 1. ~ 12.(2020년 신규사업)
- 예 산 액 : **672,000천원** 【 **기정액: 0천원 + 증액: 672,000천원** 】
- ※ 증액 사유 : '20. 7월 이후 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국비 30% 매칭 출연
- 사 업 량 : 672,000천원(자치단체 출연금 22.4억원 × 국비매칭 30% = 672,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시행주체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 내용 : 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국비 매칭 출연(30%)
- 지원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정부(중기부) 3차 추경으로 본예산에 미편성</p> <p>[변 경]</p> <p>▣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국비) : 672,000천원</p> <p>○ 천안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2,000,000천원 × 30%(국비 매칭) = 600,000천원</p> <p>○ 공주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200,000천원 × 30%(국비 매칭) = 60,000천원</p> <p>○ 당진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40,000천원 × 30%(국비 매칭) = 12,000천원</p>	
총사업비	672,000천원(국비 67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72,000		0	672,000	672,000		신규
국 비	672,000		0	672,000	672,0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이종규 (행) 2220	윤태노 (행) 3435	이영진 (행) 3442

벤처투자조합(펀드) 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부사업	벤처투자조합(펀드) 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벤처창업 혁신성장 네트워크 구성,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투자지원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제 「선도기업」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천원** 【 **기정액: 15,000천원 + 감액 : 6,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펀드)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조정
- 사 업 량 : 정기 멘토링을 통한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정기 멘토링 년 4회, 데모데이* 년 2회)
 - * 투자자에게 기업현황 등을 설명하고 투자지원 등을 요청하는 자리
 - 협의회 구성 : 지원기관(충남TP 등 7개), 대학교(공주대 등 16개), 및 전문투자기관(엔젤클럽 및 액셀러레이터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엔젤매칭 투자지원 컨설팅 등 투자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원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조의3

<p>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p> <p>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6.3.29></p> <p>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목개정 2007.8.3.]</p> <p>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 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5.29, 2017.7.26></p> <p>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벤처투자조합(펀드) 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 : 15,000천원</p> <p>○ IR 데모데이 개최 : 7,600천원</p> <p>· 3,800천원 × 2회 = 7,600천원(전문가 활용비, 행사임차료, 행사자료 인쇄비 등)</p> <p>○ 정기 멘토링 : 7,400천원</p> <p>· 740천원 × 10회 = 7,400천원(전문가 활용비, 멘토링 지원비용, 기업자료 인쇄비 등)</p>	

	[변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펀드) 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 : 9,000천원 <input type="checkbox"/> IR 데모데이 개최 : 6,200천원 · 3,100천원 × 2회 = 6,200천원(전문가 활용비, 행사임차료, 행사자료 인쇄비 등) <input type="checkbox"/> 정기 멘토링 : 2,800천원 · 700천원 × 4회 = 2,800천원(전문가 활용비, 멘토링 지원비용, 기업자료 인쇄비 등)	
총사업비	9,000천원(도비 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		15,000	9,000	△6,000		
국비							
도비	9,000		15,000	9,000	△6,000		
시군비							
기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이종규(행) 2220	윤태노(행) 3435	이영진(행) 3442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	소상공인 지원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 관광, 수출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3.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1,600,000천원 【 기정액: 50,000,000천원 + 감액 : 8,40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감액 조정
- 사 업 량 : 112,994개 업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시군
- 사업 내용 :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20%이상 감소 입증 시 업체당 1,000천원 또는 매출감소 입증없이 500천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 100,000,000천원 ○ 100,000개 업체 × 1,000천원 = 100,000,000천원 ※ 재원분담비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변 경] ■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 83,200,000천원(112,994건) ○ (매출감소 입증) 53,406건 × 1,000천원 = 53,406,000천원 ○ (매출감소 미입증) 59,588건 × 500천원 = 29,794,000천원	
총사업비	83,200,000천원(지역개발기금 41,600,000, 시군비 41,6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3,200,000		100,000,000	83,200,000	△16,800,000		
국 비							
도 비	41,600,000		50,000,000	41,600,000	△8,400,000		지역개발기금
시군비	41,600,000		50,000,000	41,600,000	△8,400,000		
기 타							

* 보조율 : 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박수민 (행) 22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기반시설 확충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991,194천원** 【 **기정액: 4,000,000천원 + 감액 : 8,806천원** 】
- ※ 감액 사유 : 1~2차 공모 최종선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대상 : ‘법’에 정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시설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2020년 시설현대화 사업 1식(공모 선정) : 6,700,000천원 × 1식 = 6,700,000천원 [변 경]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6,652,562천원 ○ 1차 선정(천안중앙시장 등 11개 시장) : 5,558,799천원 × 1식 = 5,558,799천원 ○ 2차 선정(온양온천시장 등 3개 시장) : 1,093,763천원 × 1식 = 1,093,763천원	
총사업비	6,652,562천원(도비 3,991,194, 시군비 2,517,956, 자부담 143,41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652,562		6,700,000	6,652,562	△47,438		
국 비							
도 비	3,991,194		4,000,000	3,991,194	△8,806		
시군비	2,517,956		2,350,000	2,517,956	167,956		
기 타	143,412		350,000	143,412	△206,588		

* 보조율 : 도비 60%, 시군비 38%, 자부담 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80,000	4,08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지역상품전시회 지원(국가직접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국가직접)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우수한 지역상품 전시 및 전통시장 홍보
- 사업 위치 : 공주시 금강변 신관공원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30,000천원 + 감액: 30,000천원 】**
-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품전시회 행사 추진 불가
- 사 업 량 : 지역상품전시회 행사 1회
- 사업시행방법 : 국가직접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남상인연합회
- 사업 내용 : 도내 우수한 지역상품전시 및 전통시장 홍보 등 지역상품전시회 행사 개최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지역상품전시회 : 30,000천원 ○ 지역상품전시회 개최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변 경]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품전시회 행사 추진 불가로 예산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30,000	0	△30,000		
국 비							
도 비	0		30,000	0	△3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여 매출 및 고객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2,936천원 【 기정액: 665,000천원 + 감액 : 132,064천원 】**
- ※ 감액 사유 : 1~3차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28개 전통시장(청년상인 육성 등 공모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대상 : ‘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시설
- 사업 내용 : 지역특화상품 개발, 상인조직 역량강화, 핵심점포·청년상인 육성 등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지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2020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 2020년 경영현대화 사업 1식(공모 선정) : 1,330,000천원 × 1식 = 1,330,000천원	
	[변 경]	
■ 2020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 1,124,990천원		
○ 1차 선정(천안중앙시장 등 23개 시장) : 1,041,560천원 × 1식 = 1,041,560천원		
○ 2차 선정(성정시장 등 16개 시장) : 79,728천원 × 1식 = 79,728천원		
○ 3차 선정(둔포전통시장 등 3개 시장) : 3,701천원 × 1식 = 3,701천원		
총사업비	1,124,990천원(도비 532,936, 시군비 493,521, 자부담 98,5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24,990		1,330,000	1,124,990	△205,010		
국 비							
도 비	532,936		665,000	532,936	△132,064		
시군비	493,521		595,000	493,521	△101,479		
기 타	98,533		70,000	98,533	28,533		

* 보조율 : 도비 47%, 시군비 44%, 자부담 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5,000	594,250	0	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구조개선
	세부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선진시장 벤치마킹 및 전통시장 이용 촉진 대국민 홍보,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홍보, 시장 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매촉진에 기여
- 사업 위치 : 전국(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22,500천원 + 감액: 22,500천원 】**
 ※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미정으로 참여 불가
- 사 업 량 : 매년 10개 내외 시장 2박3일간 참여, 시장별 대표상품 홍보, 전시, 판매 등
- 사업시행방법 : (사)충남상인연합회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상인연합회(민간대행)
- 사업 내용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에 대한 경비 지원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지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지원 : 22,500천원 ○ 교통비 : 30천원×50명×2일 = 3,000천원, 식비 : 8천원×50명×7식 = 2,800천원 ○ 숙 박 비 : 50천원×50명×2박 = 5,000천원, 차량임차료 : 600천원×10대 = 6,000천원 ○ 도 홍보관 운영 등 : 1,000천원, 기타비용 : 1,700천원 ○ 홍보비(시장별 홍보물 제작비, 참가물품 대여비) : 300천원×10개소 = 3,000천원 [변 경]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미정으로 예산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22,500	0	△22,500		
국 비							
도 비	0		22,500	0	△22,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000	1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선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및 시설현대화사업 벤치마킹, 다양한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경영능력제고 및 상인의식 전환
- 사업 위치 : 국내 및 해외 선진시장 견학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18,000천원 + 감액: 18,000천원 】**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추진 불가
- 사 업 량 : 1회(도내 전통시장 상인 25명 내외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사)충남상인연합회(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상인연합회장
- 사업 내용 :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에 대한 경비 지원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지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 36,000천원(도비 18,000 기타 18,000) ○ 여행경비 : 1,200천원×30명 = 36,000천원 [변 경]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추진 불가로 예산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36,000	0	△36,000		
국 비							
도 비	0		18,000	0	△18,000		
시군비							
기 타	0		18,000	0	△18,000		

* 보조율 : 도비 50%,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000	17,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69,920천원** 【 고정액: 1,987,920천원 + 증액: 882,000천원 】
 ※ 증액 사유: 추가발행(147,000,000천원)에 따른 증액 (국비 80 : 지방비 20 매칭)
- 사 업 량 : (기존) 331,320,000천원 발행 → (변경) 478,320,000천원 발행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유통(판매, 환전, 할인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6,626,400천원(발행규모 331,320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6,626,400천원(도비 1,987,920 시군비 4,638,480) [변 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9,566,400천원(발행규모 478,320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9,566,400천원(도비 2,869,920 시군비 6,696,480)	
총사업비	9,566,400천원(도비 2,869,920 시군비 6,696,4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566,400	0	6,626,400	9,566,400	2,940,000	0	
국 비	0				0		
도 비	2,869,920		1,987,920	2,869,920	882,000		
시군비	6,696,480		4,638,480	6,696,480	2,058,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3,000	346,428	26,572	92.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태안읍 중앙로 상가와 읍내 2개 전통시장이 연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읍 중앙로(구터미널 삼거리~태안중학교 후문), 특산물전통시장, 서부재래시장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0월 중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30,000천원 + 감액: 36,000천원 】**
 ※ 코로나19로 인한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태안거리축제) 추진 불가
- 사 업 량 :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식
 - 전통음식 체험(떡메치기, 김장담그기 등), 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장터 운영, 군민 어울림 마당 (읍·면 노래자랑) 등
- 사업시행방법 :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대상 : “법”에 정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의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 90,000천원 ○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 90,000천원 × 1식 = 90,000천원 [변 경] ■ 코로나19로 인해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태안거리축제) 추진 불가로 예산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군비 0 자부담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90,000	0	△90,000		
국 비							
도 비	0		36,000	0	△36,000		
시군비	0		36,000	0	△36,000		
기 타	0		18,000	0	△18,000		

* 보조율 :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4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 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공) 3436	유재석 (행) 3443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6개 시군, 11개 전통시장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계속) ※ 추경3회 성립전 15차
- 예 산 액 : **901,523천원** 【 기정액: 358,400천원 + 증액: 543,123천원 】
 ※ 증액 사유 :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
- 사 업 량 : 11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6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512,000천원 ○ 1차~2차 선정(천안역전시장 등 5개 시장) : 512,000천원 × 1식 = 512,000천원 [변 경]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1,287,890천원 ○ 1차~2차 선정(천안역전시장 등 5개 시장) : 512,000천원 × 1식 = 512,000천원 ○ 3차~4차 선정(공주산성시장 등 6개 시장) : 775,890천원 × 1식 = 775,890천원	
총사업비	1,287,890천원(국비 901,523, 시군비 381,807, 자부담 4,5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87,890	0	512,000	1,287,890	775,890		
국 비	901,523		358,400	901,523	543,123		기금
도 비							
시군비	381,807		149,040	381,807	232,767		
기 타	4,560		4,560	4,560	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29%, 자부담 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1,320	271,32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h2 style="margin: 0;">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지원사업(성립전)</h2>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지원
- 사업 위치 : 계룡시 등 3개 시군, 5개 전통시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추경3회 성립전 15차
- 예 산 액 : **54,160천원** 【 **기정액: 27,080천원 + 증액: 27,080천원** 】
 ※ 증액 사유 : 중기부 사업예산 추가 교부
- 사 업 량 : 8명(5개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등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사회복지무요원 지원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지원사업 : 32,74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시 엄사더드림상점가 : 4,093천원 × 1식 = 4,093천원 ○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등 3개 시장 : 24,558천원 × 1식 = 24,558천원 ○ 금산군 금산시장 : 4,093천원 × 1식 = 4,093천원 [변 경] ■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지무요원 지원사업 : 65,48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시 엄사더드림상점가 : 8,186천원 × 1식 = 8,186천원 ○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등 3개 시장 : 49,116천원 × 1식 = 49,116천원 ○ 금산군 금산시장 : 8,186천원 × 1식 = 8,186천원 	
총사업비	65,488천원(국비 54,160, 시군비 11,328)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5,488		32,744	65,488	32,744		
국 비	54,160		27,080	54,160	27,080		
도 비							
시군비	11,328		5,664	11,328	5,664		
기 타							

* 보조율 : 국비 83%, 시군비 1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40	안미선 (행) 3436	손아영 (행) 344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추경)(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정부추경)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추경3회 성립전 14차
- 예 산 액 : 32,641,000천원 【 기정액: 20,881,000천원 + 증액: 11,760,000천원 】
 ※ 증액 사유: 추가발행(147,000,000천원)에 따른 증액 (국비 80% 매칭)
- 사 업 량 : (기존) 331,320,000천원 발행 → (변경) 478,320,000천원 발행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정부추경) : 20,881,000천원(발행규모 331,320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0,881,000천원(국비 20,881,000) [변 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32,641,000천원(발행규모 478,320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32,641,000천원(국비 32,641,000)	
총사업비	32,641,000천원(국비 32,64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641,000		20,881,000	32,641,000	11,760,000		
국 비	32,641,000		20,881,000	32,641,000	11,760,0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비용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 도모
- 사업 위치 : 13개시군
- 사업 기간 : 2020. 6. ~ 12.(단년도 계속사업) ※ 추경3회 성립전 3차
- 예 산 액 : **2,120,000천원 【 지정액: 0천원 + 증액: 2,120,000천원 】**
 - ※ 증액 사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분 반영
- 사 업 량 : 1,170개소(확진자 방문·운영점포 462 휴업점포 708)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및 휴업점포에 대한 재개장 지원
 -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지원(임대료, 인건비 제외)
 - 지원한도 : (방문·운영점포) 최대 300만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원
- 지원근거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시행기준 / 중소벤처기업부(’20. 4월)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정부 추경으로 본예산에 미편성 [변 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120,000천원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 462개소×300백만원 = 1,386,000천원 - 휴업점포 : 708개소×100만원 = 708,000천원 - 간접비(인건비 등): 26,000천원	
총사업비	2,120,000천원(국비 2,1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120,000		0	2,120,000	2,120,000		신규
국 비	2,120,000		0	2,120,000	2,120,0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유재석 (행) 344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3차추경)(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정부3차추경)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추경3회 성립전 17차
- 예 산 액 : 2,514,000천원 【 기정액: 0천원 + 증액: 2,514,000천원 】
 ※ 증액 사유: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10% 할인판매 비용의 4%)
- 사 업 량 : 발행규모 62,841,000천원(본예산 38,841,000 본예산외 추가 24,000,000)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국비 4%)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정부추경으로 본예산에 미편성 [변 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514,000천원(발행규모 62,841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514,000천원 * 할인판매비용 10%에 대한 국비 4% 지원	
총사업비	2,514,000천원(국비 2,51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14,000		0	2,514,000	2,514,000		신규
국 비	2,514,000		0	2,514,000	2,514,0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종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1.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사무관리비) ... 89
2.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91
3. 기업유치설명회 93
4. 국방산단 업무추진(국내여비) 95
5. 국방산단 조성지원 97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사무관리비)	정책사업	외국 투자유치
	단위사업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세부사업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투자유치 채널 확보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자료 제작, 투자상담 대응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연중)
- 예 산 액 : **13,140천원** 【 **기정액: 43,640천원 + 감액: 30,5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 전면 중단되어 총 30,500천원 미집행(투자유치 상담자료 제작 및 통번역료 3,500천원, 해외임차료 27,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내용
 - 투자유치 상담자료 제작 및 통·번역료 : 투자상담 및 해외IR 등에 필요한 자료제작 및 통·번역료
 -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검증 등
 - 국내 외자유치 업무 전용차량 임차(2개월분)
 - 외투기업 국내 본사 및 공장(전국), 산업부(세종), KOTRA(서울), 도내 외투단지 등 상시 출장
 - 운행거리(2019년 기준) : 18,384km (도청~서울 74회 왕복)
 -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 : 해외투자활동 시 행사장 및 차량 등 시설 임차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사무관리비 : 43,6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상담자료 제작 및 통·번역료 : 13,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료 제작 1,500천원 × 5회 = 7,500천원 · 통·번역료 1,200천원 × 5회 = 6,000천원 ○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 1,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천원 × 7인 × 2회 = 1,4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등 100천원 × 4회 = 400천원 ○ 국내 외자유치 업무 전용차량 임차 : 1,3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0천원/월 × 2월 = 1,340천원 ○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 : 2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등 시설 임차비 1,200천원 × 10회 = 12,000천원 · 현지차량 임차비 1,500천원 × 10회 = 15,000천원 	

	<p>[변 경]</p> <p>■ 사무관리비 : 13,140천원</p> <p>○ 투자유치 상담자료 제작 및 통·번역료 : 10,000천원</p> <p>· 상담자료 제작 1,500천원 × 7회 = 10,000천원</p> <p>○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 1,800천원</p> <p>· 100천원 X 7인 X 2회 = 1,400천원</p> <p>· 회의자료 인쇄 등 100천원 × 4회 = 400천원</p> <p>○ 국내 외자유치 업무 전용차량 임차 : 1,340천원</p> <p>· 670천원/월 X 2월 = 1,340천원</p>	
총사업비	13,140천원(도비 13,14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140		43,640	13,140	△30,500		
국 비							
도 비	13,140		43,640	13,140	△30,5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8,960	48,96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	이영석 (행) 2230	김영랑 (행) 3372	이재경 (행) 2232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정책사업	외국 투자유치
	단위사업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세부사업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통 계 목	국외업무여비(2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연중)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 전면 중단되어 국외여비 160,000천원 미집행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160,000천원 + 감액: 160,000천원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내용
 -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등 해외투자활동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본사 방문 투자상담 및 MOU체결 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공무국외여행규정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 200,000천원 ○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외여비(투자상담) · 3,200천원 X 5명 X 5회 = 80,000천원 ○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외여비(MOU 체결) · 3,750천원 X 8명 X 4회 = 120,000천원 [변 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 전면 중단으로 예산 전액 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60,000	0	△160,000		
국 비							
도 비	0		160,000	0	△16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3,500	193,470	30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	이영석 (행) 2230	김영랑 (행) 3372	이재경 (행) 2232

기업유치설명회	정책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단위사업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세부사업	기업유치 업무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치업무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방투자기업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12,645천원 + 감액: 12,645천원 】**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기업유치 간담회 1회,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연찬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기업유치 간담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기업유치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
 -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연찬회: 기업유치 관계자 표창 및 투자유치 전략 정보 공유를 통한 기업유치 능력 향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및 제14조

<p>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도지사 와 시장·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4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p>■ 기업유치설명회 : 12,64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사용료 : 2,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사용료(현수막, 기자재 임차 포함)1,350,000원 × 2회 = 2,700천원 ○ 참석자 식대 : 3,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 20,000원 × 45명 × 2식 = 1,800천원 · 연찬회 : 20,000원 × 45명 × 2식 = 1,800천원 ○ 강사료 : 8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수당 - 5급이하 공무원 (최초1시간 14만원, 1시간 초과시 8만원) 	

	<p>(140,000원×1시간 + 80,000원×1시간) × 2명 × 2회 = 880천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p> <p>○ 운영비 : 5,465천원 · 음료 및 다과 : 10,000원 × 45명 × 2회 = 900천원 · 인쇄비(교재등) : 40,000원 × 45명 × 2회 = 3,600천원 · 사무용품(펜, 노트 등) : 10,000원 × 45명 × 2회 = 900천원 · 네임택 제작 : 32,500원 × 2회 = 65천원</p> <p>[변 경]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p>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645		12,645	0	△12,645		
국 비							
도 비	12,645		12,645	0	△12,645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200	11,351	4,849	70.1%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기업유치팀	이영석 (행) 2230	이희철 (행) 3373	신국상 (행) 2235

국방산단 업무추진(국내여비)	정책사업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단위사업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특성화사업단지 개발
	세부사업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토부, 국방부 및 군 관련 산하기관(방위사업청, 기품원, 방산협회 등) 국방 국가산단 홍보, 이전 및 분소 설치 협의 등 추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3,000천원 + 감액: 3,000천원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토부 타당성 검토 관련 각 중앙부처 업무협약 등
- 지원 근거 : 공무원여비규정(인사혁신처) 및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국방산단 업무추진: 3,000천원 ○ 국내여비 · 관외: 40,000원 × 3명 × 2회 × 12월 = 2,880천원 · 관내: 20,000원 × 2명 × 1회 × 3월 = 120천원 [변 경] ■ 국방산업관련 업무가 미래산업국으로 이관되어 전액삭감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3,000	0	△3,000		
국 비							
도 비	0		3,000	0	△3,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00	4,210	1,190	77.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입지계획팀	이영석 (행) 2230	정원순 (행) 3374	이현우 (행) 3392

국방산단 조성지원	정책사업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단위사업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
	세부사업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LH 예타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에 대한 세부 공사비, 사업추진 방식 대안검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비용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기정액: 0천원 + 증액: 100,000천원** 】
- 사 업 량 : 국방국가산업단지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지방비 부담에 대한 세부 공사비, 사업방식 검토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 규] ■ 국방산단 조성지원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사업타당성 용역 1식 × 200,000천원 = 20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200,000		200,000	0	20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0	1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2020. 10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입지계획팀	이영석 (행) 2230	정원순 (행) 3374	이현우 (행) 3392

국제통상과

국제 통상과

1. 공무 국외출장 103
2.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105
3. 외국공무원 지방시찰여비 등 107
4.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초청 109
5.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 111

공무 국외출장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화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무원 해외 교류
	통 계 목	국외업무여비 (2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역점시책, 현안 사업 및 국제교류·통상 추진
- 사업 위치 : 세계 각 국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250천원 【 기정액: 240,000천원 + 감액 : 236,750천원 】**
- ※ 감액 사유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외출장 추진 어려움
- 사 업 량 : 2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주요 도정 시책 발목을 위한 정책 연수, 현장 견학, 자료수집·조사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국외출장 취소수수료 지급,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 지원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p>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p>·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88호) :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p> <p>가)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p> <p>나)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 취소수수료는 별제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1)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 ■ 공무 국외출장 : 2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현안업무, 해외통상, 국제회의 참석 등 · (국제교류 및 현안업무 추진) 3,300천원 × 60명 = 198,000천원 · (해외통상 추진) 3,200천원 × 10명 = 32,000천원 · (국제회의·행사 참석) 2,000천원(아시아) × 5명 = 10,000천원 <p>[변 경] ■ 공무 국외출장 : 3,2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안업무 수행 국외출장 취소수수료 : 250천원 · 항공권 취소 60천원 × 2명 = 120천원, 여행자보험 취소 65천원 × 2명 = 130천원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서천 유부도 등재 심의 추진 · 3,000천원 × 1명 = 3,000천원 	
총사업비	3,250천원(도비 3,2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50		240,000	3,250	△236,750		
국 비							
도 비	3,250		240,000	3,250	△236,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299,593	407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강인복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화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무원 해외 교류
	통 계 목	국제화여비 (202-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외 선진 사례 조사연구 및 우수 정책 현장 견학 등을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세계 각 국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480,000천원 + 감액: 48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외출장 추진 불가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주요 도정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연수, 현장 견학, 자료수집 조사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 지 원 근 거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p>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p>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p>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 480,000천원(도비) ○ 선진행정 사례조사 등 : 3,000천원 × 160명 = 480,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삭감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추진 불가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480,000	0	△480,000		
국 비							
도 비	0		480,000	0	△48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499,364	636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강인복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외국공무원 지방시찰여비 등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외빈초청여비 (301-07)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교류단체 공무원을 초청하여 행정·문화 연수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7,560천원 + 감액: 7,560천원 】**
- ※ 감액 사유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외국공무원 초청 불가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해외 교류단체 소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체재비 등 경비 지원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3조·제7조

<p>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3조(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급 :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국가원수, 행정 수반, 각료, 세계 주요도시 시장과 충청남도 해외 우호교류단체의 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2. B급 : 공무목적으로 방한하여 방문하는 외국정부인사, 주한외교사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3. C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문인사 <p>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7조(경비지출) 외빈영접에 따른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공무원 지방시찰 여비 등 : 7,560천원 ○ 식비, 숙박비, 일비 : (평균) 315천원 × 4명 × 6회 = 7,56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삭감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해외교류단체 소속 공무원 초청 불가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7,560	0	△7,560		
국 비							
도 비	0		7,560	0	△7,56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560	6,050	1,510	8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강인복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초청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 교류협력
세부사업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 협력
통 계 목	외빈초청여비 (301-07)

- 사업 목적 :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경제·환경·해양 등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760천원 【 기정액: 50,760천원 + 감액 : 44,000천원 】**
- ※ 감액 사유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해외전문가 등 외빈 초청 축소
- 사 업 량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우리 도를 방문하는 해외 인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의전 및 상호주의에 의한 항공, 체재비 등 경비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3조·제7조

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3조(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A급 :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국가원수, 행정 수반, 각료, 세계 주요도시 시장과 충청남도 해외 우호교류단체의 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2. B급 : 공무목적으로 방한하여 방문하는 외국정부인사, 주한외교사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3. C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문인사

충청남도 외빈영접지침 제7조(경비지출) 외빈영접에 따른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 ▣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외빈 초청 : 50,7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주, 중화권, 아주 지역 교류단체 방문단 초청 안내 · (평균)282천원 × 180명 = 50,760천원 <p>[변 경] ▣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외빈 초청 : 6,7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 대표단 방문(1월, 6명) : 96천원 · (식비) 16천원 × 6명 = 96천원 ○ 인도네시아 경찰연수생(국내) 도 방문(7월, 20명) : 964천원 · (식비, 일비) 48.2천원 × 20명 = 964천원 ○ 한중최고위과정(중국대사관 주관) 한중리더 도 방문(11월, 40명) : 5,700천원 · (숙식비) 190천원 × 30명 = 5,700천원 	
총사업비	6,760천원(도비 6,7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760		50,760	6,760	△44,000		
국 비							
도 비	6,760		50,760	6,760	△4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3,809	1,191	97.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강인복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	국제 민간교류 확대
	통 계 목	민간인 국외여비 (301-06)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로벌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50,000천원 + 감액: 5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민간 국외활동 참여 불가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동행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지원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p>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p>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을 별표 9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민간교류 확대 : 50,000천원 ○ 민간인 국외여비 : (평균) 5,000천원 × 10명 = 50,000천원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삭감 : 세계 각 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민간인 국외활동 추진 불가 	
총사업비	0천원(도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50,000	0	△50,000		
국 비							
도 비	0		50,000	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21,268	8,732	70.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강인복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